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 운영 및 지원조례안

의 안 번 호	108
------------	-----

제출연월일 : 2007. 3. 30.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나.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의 사업 및 이용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내지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여성발전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2007년도 예산 반영 / 196백만원(분권 102, 시비 94)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기 타
 - (1) 규제심사 : 규제 신설 · 폐지 등 없음
 - (2) 입법예고 : 2006. 9. 28 ~ 10. 19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 설치하는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의 필요성이 큰 지역에 우선 설치할 수 있다.

1. 여성인구 다수 거주지역
2. 사업체 등 여성인력수요가 많은 지역

② 센터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사무실
2. 교육실 및 강의실(실습실 포함)
3. 회의실
4. 상담실 및 자료정보실
5. 유아놀이방
6. 강당
7. 창업보육실
8. 식당
9. 장애인 편의시설
10.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시설

제3조(사업)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교육사업

2.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 상담 · 알선 · 지원사업
3. 수강생 및 시설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운영 등 후생복지사업
4. 그 밖에 여성능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이용대상) 센터는 대전광역시 거주여성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운영) 센터는 시장이 관리 ·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시장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인원 · 자격,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정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의 수납) ①시장은 수탁자가 센터의 이용자로부터 협약서에 정한 이용료를 수납하게 한다.
②시장은 수탁자가 수납한 이용료를 센터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 사업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비 등의 지원) 시장이 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관리비, 시설비, 시설기자재 설치비, 교육훈련경비, 그 밖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으로 하되 시설면적, 교육실적, 취업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 · 감독) ①시장은 센터의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 부당 · 운영부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위탁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위탁운영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관 계 법령

□ 여성발전기본법

- 제33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한 여성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한 여성과 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여성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④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⑤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 등 필요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제7786호, 2005.12.29>

제3조(여성인력개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여성인력개발센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당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운영을 위탁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본다.

제4조(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국가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국가의 채권은 당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승계한다.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3(여성관련시설의 지원)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2.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3. 남녀평등교육
4. 그 밖의 후생복지 및 문화활동의 지원

□ 대전광역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 ①시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위임 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관련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제6조 규정의 대전광역시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탁대상별로 대전광역시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의무이행 강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